

## 고용노동부 연락처

구 分	연 락 처	구 分	연 락 처
고용노동부 본부	1350	의정부지청	031-850-7640
서울지방고용노동청	02-2250-5772	고양지청	031-931-2864
서울강남지청	02-584-0009	경기지청	031-259-0265
서울동부지청	02-2142-8872	성남지청	031-788-1571
서울서부지청	02-2077-6171	안양지청	031-463-7351
서울남부지청	02-2639-2271	안진지청	031-412-1974
서울북부지청	02-950-9831	평택지청	031-646-1182
서울관악지청	02-3282-9092	강원지청	033-269-3581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0-6480	강릉지청	033-650-2525
부산동부지청	051-559-6670	원주지청	033-769-0823
부산북부지청	051-309-1552	태백지청	033-552-8603
창원지청	055-239-6580	영월출장소	033-371-6240
울산지청	052-228-1889	광주지방고용노동청	062-975-6331
양산지청	055-370-0935	전주지청	063-240-3399
진주지청	055-752-1752	의신지청	063-839-0031
통영지청	055-650-1949	군산지청	063-450-0530
대구지방고용노동청	053-667-6360	목포지청	061-280-0100
대구서부지청	053-605-9150	여수지청	061-650-0137
포항지청	054-271-6833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	064-728-6100
구미지청	054-450-3550	대전지방고용노동청	042-480-6307
영주지청	054-639-1155	청주지청	043-299-1314
안동지청	054-851-8037	천안지청	041-560-2874
증주지방고용노동청	032-460-4419	충주지청	043-840-4032
인천북부지청	032-540-7980	보령지청	041-930-6142
부천지청	032-714-8788	서산출장소	041-661-5630

\* 안전보건공단 콜센터 : 1644-4544

2019-교육홍보-1524

2019-교육홍보-1524

## II. 그 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사항

###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동일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재발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그 작업의 중지(일부 중지)를 명할 수 있고
- 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주변 확산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전부 중지)할 수 있도록 함
- 한편 작업중지 해제 시에는 중대재해 발생 해당직업 근로자 의견을 청취하고, 해제 심의위원회는 해제요청일 다음 날부터 4일 이내(토요일·공휴일 포함)에 개최·심의하도록 함

### 위험성평가 관련 근로자 참여 의무화

-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등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 크기가 허용 가능 범위인지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법률상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근로자 참여사항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근로자가 참여하여야 함

### 화재감시자 배치 확대

- 종전에는 대규모 공사현장 등에서 응접·용단 작업 시 화재감시자를 배치하도록 함
- 개정법령에서는 불꽃의 비산 거리(11m) 이내·외 가연성 물질, 열전도나 열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등으로 화재감시자 배치를 확대하여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강화하였고
- 사업주에게 작업시작 전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 확인 및 안전조치 이행 의무를 부과하고, 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작업내용·일시, 안전점검 및 조치 사항 등을 서면 게시하도록 함

###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작업 중 근로자에게 노출될 경우 건강장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어 주기적인 측정·검진이 필요한 유해인자에 2종(인동, 1,2-디클로로프로판)을 추가 지정하였음

###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이행 강화

- 그간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불이행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함
- 개정법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효과 강화를 위해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동일한 죄를 범한 경우 그 형의 2분의 1까지 기준토록 하였으며
- 유죄판결(선고유예 제외)을 받을 경우 200시간 범위 내에서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 법인에게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함

## III.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다음을 지켜주세요!

### 산재발생 시 조치

상황	조치
산재로 사망자, 부상자, 질병자 발생	산재 발생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인지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등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
산재 발생	사업장 개요, 근로자 인적사항, 재해발생 일시 및 장소, 원인 및 과정 등을 기록·보존*

\* 단,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보존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대체 가능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 13개 업종 중, 전기 계약용량이 300kw 이상인 사업으로서 해당 제품의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계·기구·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또는 장소에서 사용하거나 건강장애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건조설비, 화학설비 등의 기계·기구·설비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려는 경우

→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 분	선 입 기 준	역 할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화학물질 제조업: 상시근로자 50명 이상</li> <li>기타 업종: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li> </ul>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여야 함
관리감독자	상시근로자 5명 이상	사업장 내 부서단위에서의 산재예방 활동 촉진을 위해 사업장의 생산 관련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 있는 자는 기계·기구·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등 관련 업무 수행하여야 함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다음을 지켜주세요!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

실무내용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용기 및 포장에 반드시 경고표시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합니다.
③ 취급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해성·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장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⑦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⑧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합니다.
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⑩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안전보건교육

교育과정	교育대상	교육시간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와 같은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특별교육	일용근로자	16시간 이상*
	일용근로자 제외한 근로자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

\* 최초

작업 종사 전 4시간 이상 실시,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 가능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은 다음을 지켜주세요!

###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10가지 사항

실무내용
① 화학물질을 취급하기 전에 반드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공받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MSDS를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고, 용기 및 포장에 반드시 경고표시를 붙이거나 인쇄하여야 합니다.
③ 취급 근로자에게 반드시 유해성·위험성, 취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④ 작업장에는 화학물질 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⑤ 근로자에게 적합한 개인보호구(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보호복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
⑥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⑦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⑧ 근로자가 세면·목욕 등을 할 수 있도록 세척시설을 설치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복과 노출된 신체 부위를 깨끗하게 세척하여야 합니다.
⑨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실내작업장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음식물을 먹어서는 안됩니다.
⑩ 화학물질 취급으로 신체에 이상(구토, 호흡곤란, 피부발진 등)을 느끼면 반드시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의사의 적절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이렇게 바뀝니다!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

이렇게 바뀝니다!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div data-bbox="760 863

